

1991 년도 지방토론회(충북편)

전환기 언론의 윤리적 책임

안광식

이화여대 신방과 교수·중재위원

6·29 선언 이후에 언론은 법제적·구조적·내용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의 시대」가 사라지고, 지금은 언론이 자유경쟁 아래 다원화와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언론의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의 전환기를 맞아 현 시점에서 언론의 자유경쟁이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역기능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생기는 오보와 허보 등 보도의 문제점들, 광고의 강매현상, 사이버 기자의 출현, 선정적 외설적 내용물의 증가 등 비윤리적 목록들이 요즈음 적지 않게 신문·방송·잡지 등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제 1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어떤 사건과 사회적 과정에 관한 「사실」을 잘 보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를 때로는 밝혀내지 못한 채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있어 기본문제로 지적 된다.

언론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의 여부를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최고의 가치와 생명일진대, 언론은 그 어려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으며, 만일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오보 또는 허보로 사회를 오도, 역사를 왜곡, 인권을 유린, 명예를 침해했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이 불명예스럽게도 오보를 가끔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아왔던 신문·방송·잡지가 더욱 체면을 스스로 깎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보 또는 허보가 빈번해지면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분위기가 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그 밖의 대중매체들은 오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질 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풍토에서는 아직 까지도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비록 정정을 한대손 치더라도 그것을 언론의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오보를 자주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상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편 보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정주의는 수용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자극시키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기능이 강하며, 선정주의의 추구는 긴장완화 또는 불만해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선정주의는 또한 수용자들에게 값싼 낭만성을 조성해 주고, 흥미본위의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호기심과 화제거리를 조성해 주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큰 사건이 생기면 그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확대, 과장하여 보도, 편집하는 경향이 습성화된 것같이 보인다 그와 같은 경우들이 특히 사회범죄사건들과 관련된 살인, 강도, 치정, 폭행사과 등에 관한 보도들이다.

미디어에서는 또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사와 제목을 통하여 유죄판결과도 같은 「언론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언론이 성급하게 흥미위주로 사건을 취급하여 보도하는 습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요즈음 언론이 「공공의 이익」보다 수용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보다 더 염두에 두는 경향이 농후하고, 질적으로 좋은 신문, 방송, 잡지를 제작하려는 노력보다 흥미위주의 「오락성과 선정성」을 발휘하여 상업주의에 영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의 소산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중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백한 허보나 오보 또는 언론침해에 대한 정정을 법원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는 최종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것이다. 법원을 통하여 번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신청인 뿐만 아니라 언론사측에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된다. 6·29 선언 이후에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론매체가 증가하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이 지금 전환기를 맞아 윤리적 위상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언론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언론매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규정을 준수하면서 보도의 가치와 윤리성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의 전환기에 처해서 유감스럽게도 언론의 윤리적 수준이 자율에만 의존해도 좋다고 평가되는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끝으로 언론의 전환기를 맞아 자유경쟁의 시대에 있어 윤리적 책임의 제고는 언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언론의 위치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며, 공중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언론이 이와 같은 윤리적 책임을 좀더 인식, 이해함으로써 언론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졸(저널리즘 전공)
- 저술 : 「신문과 정부와의 갈등」,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변동」 (역), 「세계의 신문」 (공저)외 논문 다수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991 년도 지방토론회(충북편)

토론

사회 홍진희

서원대 법학과 교수·중재위원

통신기사라도 오보때는 정정해야

사회자(홍진희 위원·서원대 법학과 교수) :안광식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이나 언론중재제도 전반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일보의 권영관 편집국장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영관(충청일보 편집국장)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지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취재망을 갖고 있지 못한 탓으로 연합통신의 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통신에서 오보를 냈을 경우, 그것을 인용한 지방지에도 그 책임이 있게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지역기사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에게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승철(중부매일 편집부국장) :지방지에서 연합통신의 오보 기사를 전재했을 때, 지방지와 연합통신 모두 그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불만이 많습니다. 안교수께서는 어떤 사실 이 취재원과 기자, 편집자를 거쳐서 보도될 때에는 두번 또는 세번씩이나 왜곡, 가미, 오염된 보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는 경험있는 데스크에 의해 보완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언론도 기업인 만큼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한 기사를 놓고 광고국이나 판매국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자적 양심에서라면 그 협의를 과감히 물리쳐야 하겠지만, 경영측면을

생각해 보면 보도를 유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교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안광식 위원·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 대부분 연합뉴스 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지의 현실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여 오보가 났을 때 그 1 차적인 책임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에서 그 기사를 전재했다면, 그때에는 이미 그 신문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이미 판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지에서 정정보도를 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보로 판명되어 언론의 입장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럴 경우 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보나 허보의 문제는 기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취재원측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발표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의 발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 본 후에 기사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확인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론의 상업성과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사명은 공공성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목적이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업성이나 경영측면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공공성 또는 공익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영관 : 언론에서는 경찰의 수사발표 내용을 가급적이면 확인한 후에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에서는 사건의 범인을 기자들 앞에 세워 놓고 인터뷰를 허락합니다. 이럴 때에 사건기자들은 여러가지 방향에서 범행동기나 현재의 심정, 그리고 고문등에 의한 조작가능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사건 취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재에 불과합니다. 소위 인터뷰에 지나지 않는 취재 에서는 피의자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는데,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밝혀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보가 꼭 기자들의 확인부족이나 취재불찰에서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철저히 지키고 있어

발표자 : 우리나라 언론의 사회면 기사는 대부분 강도·강간 살인 등 사건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일본식 저널리즘을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서 우리 언론의 사회면처럼 함부로 사건보도를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권국장께서 지적 하셨듯이 범인과 인터뷰를 하여 취재를 해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건 기사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박종성(서원대 학보사 주간) : 대학언론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자체적으로 편집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최근 대학신문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언론중재제도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대학언론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어디까지나 중재 또는 시정권고에만 그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 정도 역할에만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언론사가 허보나 오보를 반복해서 한다거나 또는 시정권고를 되풀이 하여 받을 경우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권한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조재호(한국은행 청주시점 기획조사과장) : 경제정책등의 주요 국가시책이 정책입안단계에서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전 보도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수립목적이 효과를 잃거나,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건설부의 주택정책 문제나 경제부처의 환율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입안중인 사안을 보도하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나 정부의 입장에서나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언론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명감에서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이겠지만, 좀 더 깊이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발표자 : 현재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중재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중재기능은 언론사에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불성립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언론이 국가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 발표 이전에 그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에 관하여는 그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 스스로 신중해질 수 밖에 없고 또 실정법상으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한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 형태 지양돼야

이양규(청주문화방송 심의위원) :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은 주로 활자매체에 국한하여 논의되었기 때문에 저는 방송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도 뉴스프로그램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심의에 관한 부분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방송 뉴스 및 오락, 방송 영화, 기타 모든 프로그램이 이 심의규정에 따라 통제 또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매체에 비해 방송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집단적인 견제세력이 존재합니다.

또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마다 자체 심의실을 두게 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언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사회에서 범죄가 없을 수 없듯이, 언론의 윤리문제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개념의 한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윤리문제가 비단 그 책임이 언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됩니다. 예를 들면 확정판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신원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 기구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를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실로 인해 검찰 또는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나름대로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타 부분 심지어 국민전체가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재무장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준모(KBS 충주방송국 방송국장) : 언젠가는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내용 모두가 수렴되어 우리 현실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막상 취재현장에 임하다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보호 문제가 충돌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수서사건만 하더라도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다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 개인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분발하지 않았더라면 수사가 그만큼 진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교과서적인 견해들이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여 보도하거나 또는 확정판결후에 보도해야 된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며, 잘못 하다가는 그 사건 자체가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 오신 분께서 정부정책이 확정된 후에 보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정책이 확정된 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보도한다면 과연 언론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그 문제가 지역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결정 이전에 보도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케 해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발표자 : 방송국에서 나온신 두분께서 알 권리와 보도의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개인법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보도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도적인 변동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알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보도행태는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윤리기준이란 어디까지나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율적인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나 방송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적 통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이나, KBS, MBC, 동아일보 등 몇몇 매체에서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매체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건수가 많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중재건수가 없어야만 우리 언론윤리가 제대로 확립 되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구제를 위해 시민과 언론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언론윤리가 확립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